



제 433회 국회 (임시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농림수산물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 정비〉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346호)

2026. 3.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정은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총괄 검토	4
2. 제명 및 목적 변경	12
3. 정의 규정	15
4.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 신설	28
5.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30
6. 투자촉진 지원 사업 근거 마련	32
7.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확대	35
8. 세컨더리 펀드 등에 대한 투자의무 완화 근거 신설	39
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45
10. 서류의 열람 절차 및 방법 위임	53
11. 필요한 조치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신설	55
12.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59
13. 유사 명칭 사용금지	61
14. 벌칙 및 과태료 정비	62
[참고자료]	68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2. 발 의 일 : 2025. 12. 17.
3. 회 부 일 : 2025. 12. 1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제안이유

농식품모태펀드는 2010년부터 농식품경영체의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모태펀드 출자, 자펀드 결성, 투자 및 회수 구조를 통해 농식품산업의 투자 마중물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2024년 기준 농식품산업의 GDP 비중은 3% 수준임에도 농식품 분야 벤처투자 비중은 1.6%에 불과하여 산업 규모 대비 민간 투자가 매우 저조한 실정임.

푸드테크, 스마트농업, 그린바이오 등 농식품 신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K-푸드 수출이 확대되는 등 산업 환경이 변화하고 있으나, 현행 법률은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투자정보 관리, 투자관리기관의 책무 규정, 투자자 보호 체계 등에서 미흡하여 민간투자 생태계 조성을 뒷받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되었음.

특히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N) 등 초기 기업 투자 방식 도입 근거가 부재하고,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시스템의 법적 기반 부족,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한 투자기준 미비, 공무

수탁사인의 비밀누설 금지 규정 부재 등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벌칙·과태료 수준이 유사 입법례에 비해 낮아 제재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농식품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 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고, 정의 규정 정비, 새로운 투자방식 도입, 실태조사 및 정보관리 근거 마련, 자펀드 관리체계 강화, 세컨더리펀드 기준 정비, 벌칙 및 과태료 상향 등 전반적인 제도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민간투자 유입을 확대하고 농식품 신산업 육성 기반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률 명칭을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1조).

나. 현행 정의 규정을 일반적인 입법 방식에 맞게 정비하고, SAFE·CN 등 다양한 신규 투자방식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다. 국가의 책무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를 명확히 규정함(안 제4조).

라. 농식품산업 투자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운영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조의2 및 제4조의3).

마. 농식품 분야 특성을 고려한 투자 촉진 지원사업을 신설함(안 제4조의4).

바. 세컨더리펀드의 특성을 반영하여 별도의 투자의무 기준을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

사. 조문의 내용에 맞게 ‘조합의 공시’를 ‘조합 서류의 열람’으로 조문 제목을 변경함(안 제22조).

아. 자펀드의 투자실적 및 결산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의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27조의2).

자. 행정처분 및 등록취소 사유를 정비하고, 보고·검사에 대한 협조 의무를 강화함(안 제28조 및 제30조).

차. 공무수탁사인(농업정책보험금융원 임직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안 제31조의3).

카. 농식품투자조합뿐 아니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유사 명칭 사용을 금지하여 투자자 및 피투자경영체 보호를 강화함(안 제32조).

타. 벌칙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여 제재 실효성을 강화함(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안 제33조).

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신설함(안 제33조의2).

하. 과태료 수준을 유사 입법례 수준으로 상향하고 적용 대상을 정비함(안 제34조).

Ⅲ. 검토의견

1. 총괄 검토

가. 현행 제도 개요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나 회사(자펀드)에 출자하기 위하여 정부 예산 또는 기금 등으로 조성한 펀드(모펀드)임.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은 2010년 출범 이후 보조·용자를 보완·대체하는 제3섹터형 농식품 정책금융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투자재원 확보를 위하여 2024년까지 총 7,047억원을 조성하였음.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연도별 재원 조성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농특회계	507	-	-	-	-	-	-	-	-	-	-	-	-	-	-	507
농안기금	-	500	500	500	600	-	-	-	-	-	-	-	-	-	-	2,100
FTA기금	-	-	-	-	-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3,400
수산물발전기금	-	-	-	-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190	1,040
농금원	0.3	-	-	-	-	-	-	-	-	-	-	-	-	-	-	0.3
계	507.3	500	500	500	700	600	400	300	200	270	420	470	470	470	740	7,047.3

자료 : 2025년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계획(농업정책보험금융원, 2024.12.)

이와 같이 조성된 모태조합의 자금은 현행법 제11조¹⁾에 따라 ①번

1) 법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 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처투자회사, ②신기술사업금융업자, ③투자관리전문기관, ④농·수협 조합 및 중앙회 등이 민간의 출자금과 매칭하여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고 투자를 실시하는 데 사용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개요]

구 분	내 용
근거법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주요내용	운용사 등이 모태펀드 출자를 받아 결성
결성주체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상법상 유한(책임)회사 등
주요 투자대상	농식품경영체
투자의무 비율	출자금액 60% 이상 투자
존속기간	3년 이상
출자금 총액	10억원 이상
주목적 투자(출자)	농식품경영체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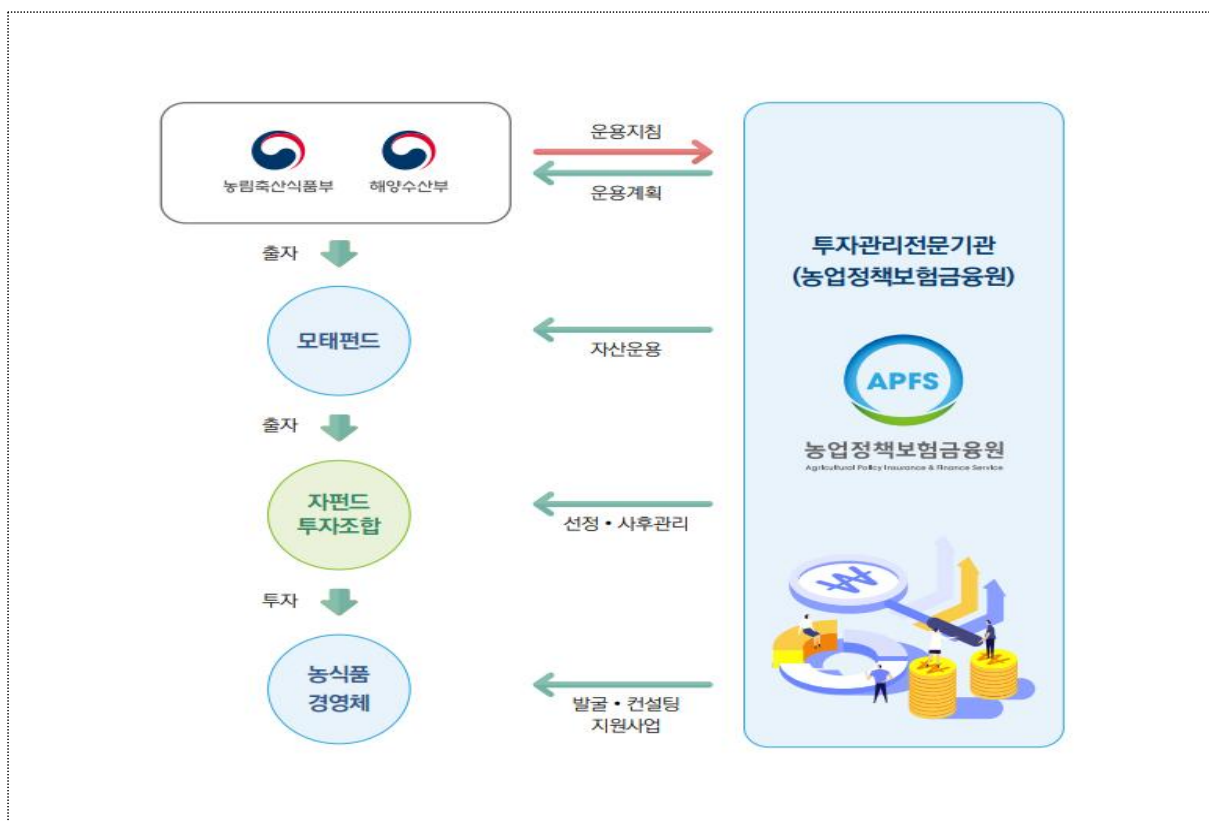
한편, 농어업분야는 기후, 토양, 계절 변화 등 다양한 자연 환경 요인의 영향을 받고, 기상 조건이나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이 크게 변동될 수 있으며, 다른 산업에 비해 체계적인 데이터나 통계 자료가 부족한 특성이 있어 투자자와 농식품경영체 간 정보비대칭이 존재함.

-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따라서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자금과 투자대상인 농식품경영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 제5조²⁾는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자산을 운용하고, 농식품경영체에 대해 직·간접 투자를 행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에 관한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현재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근거한 법정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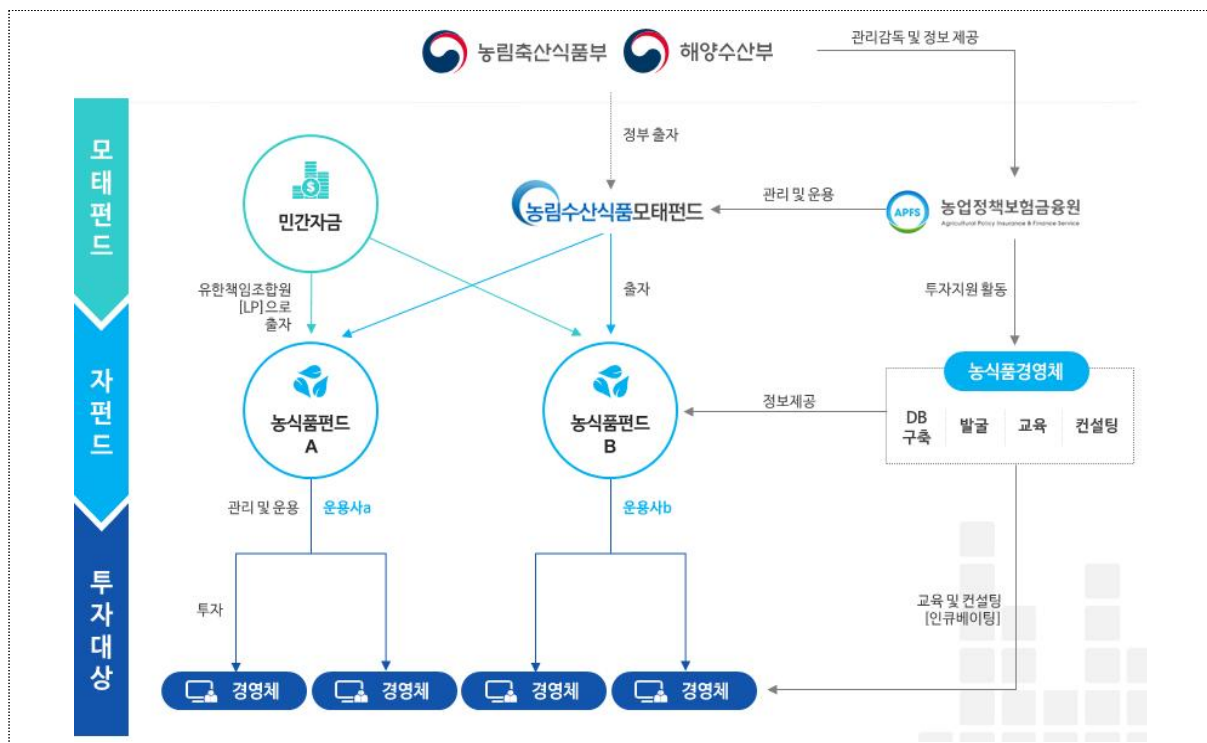


자료 : 농업정책보험금융원

- 2) 법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모태펀드의 출자·투자 구조를 살펴보면, ① 정부(농림부, 해수부) 재정으로 농림수산물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정부 출자)하고 ②농림수산물식품모태조합(농림수산물식품투자모태펀드)을 관리·운용하는 투자관리전문기관(농업정책보험금융원)이 민간(자산운용사)과 매칭하여 벤처투자회사 등이 결성한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농식품펀드, 자펀드)에 출자하면, ③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이 성장 가능성 있는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고, ④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경영체 경영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담당하며, ⑤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로부터 투자금을 회수한 후 ⑥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에 재투자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짐.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구조]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2024년 말 기준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은 140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에 1조 2,878억원 이상을 출자하였으며, 이 중 농식품펀드는 120개(1조 1,086억원), 수산 펀드는 20개(1,792억원)임.

민간 출자액 약 9,898억원 등을 포함하면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누적 운용자산은 총 2조 2,776억원인데, 실제 투자는 1,289건('24년 말 기준 898개 농식품경영체)으로 약 1조 5,568억원이 이루어져 투자 소진율은 68.4%로 나타나고 있음.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투자 현황]

(기준 : '24.12월)

계정 구분	농식품투자계정	수산투자계정	합 계
농식품투자조합(자펀드) 개수	120개	20개	140개
자펀드 결성 총액(A)	19,808억원	2,968억원	22,776억원
투자 건수	1,119건	170건	1,289건
투자 금액(B)	13,380억원	2,188억원	15,568억원
투자 소진율(B/A)	67.5%	73.7%	68.4%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그 밖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의 존속기간은 통상 8년이며, 존속기간 종료 후 조합 청산까지 평균 1.9년이 소요되어,³⁾ 최종적으로 조합 설립에서 청산까지 통상 9.9년이 소요된다고 함.

2025년 말 기준으로 총 27개의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자펀드)이 청산 완료되었는데, 평균 수익배수⁴⁾는 1.3, 내부수익률은 7.2%로 나타났음.

3) 24.12월 현재 청산조합 25개의 평균 청산기간은 1.9년

4) 평균 수익배수: 투자자가 투자 원금 대비 얼마나 많은 수익을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비율
 <계산 공식> 평균 수익배수(MOIC)=총 회수 금액(투자자가 기업 매각, IPO, 배당 등으로 회수한 금액)/총 투자 금액(투자 시 투입된 원금)

나. 개정안의 취지 및 내용

농식품분야 투자 현황을 살펴보면 '21년 농림어업 투자는 5.7조원으로 농림어업 GDP(38.6조원)의 14.9%에 불과하여 전체 GDP 대비 투자 비중(31.6%)의 절반 수준임. 또한, '22년 기준 농식품분야 신규 벤처투자는 1,246억원으로 전체 벤처투자 규모(13.6조원)의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한편, 최근 AI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과 푸드테크 등의 확산은 농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화 가능성을 확대하며, 이에 따라 관련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투자 활성화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2010년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 출범을 목적으로 제정된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2018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변화된 투자 환경과 최근 도입·확대되고 있는 다양한 투자 방식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음.

반면, 한국벤처투자가 운영하는 중소기업모태펀드는 종전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통합하여 2020년 2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투자 방식 다양화 등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정비한 바 있음.

이에 개정안은 농식품투자모태펀드와 유사한 정책펀드인 중소기업모태펀드를 규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의 체계와 내용

을 참고하여 현행법을 정비함으로써 농식품 분야 투자 여건을 개선하려는 것임.

[벤처투자조합 및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비교]

구 분	벤처투자조합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근거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법)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농식품투자조합법)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관리기관	한국벤처투자(KVIC)	농업정책보험금융원(APFS)
정책자금 (모태)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 (중기부 모태펀드)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
운용목적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및 혁신 성장	농림수산물식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활성화
투자자 범위	주로 정부(모태펀드)+기관투자자	주로 정부(모태펀드)+기관투자자
운용대상	중소·벤처기업 (중소기업, 창업자, 벤처기업 등 전 산업 분야)	농식품 경영체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 농식품 가공·유통업체 등)
회수방법	만기상환, 양도	상환, 매각 등
결성주체	벤처투자회사(VC), 창업기획자(AC), LLC 등	농식품투자조합법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 요건 충족자
투자의무 비율	· 벤처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아래에서 정한 투자비율 이상을 창업기업 등에 투자 ① 동일한 업무집행조합원이 운용 하는 모든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 액의 합 50%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비율(40%) ② 각 벤처투자조합의 출자금액의 40%의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20%)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까지 출자금 중 100분의 60 이상을 농식품경영 체에 투자
투자방법	①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 의 인수 ②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인수 ③ 프로젝트 투자방식 ④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⑤ 조건부지분전환계약 ⑥ 다른 벤처투자조합의 GP, LP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인수	①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②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 의 인수 ③ 프로젝트 투자방식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 참고사항

개정안과 같이 농식품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①세컨더리펀드
결성 근거 마련, ②창업기획자의 운용사 참여 근거 마련, ③농식품투
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 설립 및 금융기관 차입 허용, ④민간재간접농
식품투자조합 결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안, 의안번호 제
2205584호)」이 농림축산식품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25.1.9.)되어 있
으므로 함께 심사할 필요가 있음.

2. 제명 및 목적 변경

개정안은 동 법의 제명을 ‘농림수산물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동 법의 목적에 농림수산물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추가함.

현 행	개 정 안
<u>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u>	<u>농림수산물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u>
제1조(목적) 이 법은 농림수산물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농림수산물경영체의 건전한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조성함 으로써 농림수산물산업의 진흥 및 -----.

현행 법률의 제명은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결성 및 운용’에 초점을 두고 있어, 그 내용이 투자조합 관리에 한정되는 것으로 인식되는 한계가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동 법이 농식품투자조합의 관리에 한정되지 않고 농림수산물산업 전반의 투자 촉진을 종합적으로 뒷받침하는 법률임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로 보임.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안 제4조의3), 농림수산물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추진(안 제4조의4), 농식품경영체 정보 제공(제26조) 등 투자조합 운영 외에 관한 사항이 신설됨.

[개정안에 따른 법체계]

조제목	조제목
제1장	제17조(업무집행조합원의 탈퇴)
제1조(목적)	제18조(해산)
제2조(정의)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제3조(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범위)	제20조(청산결과 보고와 등록의 말소)
제4조(국가의 책무)	제21조(조합 재산의 보호)
안 제4조의2(실태조사)	제22조(조합의 공시)
안 제4조의3(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제23조(준용규정)
안 제4조의4(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제24조(외국인의 출자에 대한 특례 등)
제2장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제4장 보칙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제25조(조세에 대한 특례)
제6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요건)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제27조(보고 등)
제8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출자)	제28조(행정처분)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제2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취소)
제10조(결산 보고)	제30조(등록의 취소)
제3장 농식품투자조합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안 제31조의3(비밀누설 금지)
제12조(기금의 투자 등)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제5장 벌칙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제33조(벌칙)
제15조(재산의 관리와 운용)	안 제33조의2(양벌규정)
제16조(결산 보고)	제34조(과태료)

다만, 개정안에 따라 신규로 도입되는 조문은 새로운 투자 제도를 창설하거나 투자정책 전반을 규율하는 내용이라기보다 농식품투자 활성화 위한 기반 구성에 한정되는 사항이라는 점에서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이라는 제명이 법률의 실질적 내용에 비해 다소 포괄적인 측면은 있다고 보임.

참고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사항 외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등 다양한 투자 주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고, 「외국인투자 촉진법」은 외국인 투자 신고허가, 외국인투자기업 지원,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등 지원 정책을 종합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률임.

또한, 개정안에 따라 법률의 제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부칙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등 동 법을 인용하고 있는 다른 법률의 개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을 것임.

한편, 목적조항의 경우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진흥’에 이바지함을 명시함으로써 투자 촉진과 경영체 성장기반 조성이 궁극적으로 산업 진흥 및 국민경제 발전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3. 정의 규정

개정안은 종전의 ‘농림수산물식품산업’,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의 정의 규정을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한편, ① 투자의 대상이 되는 회사법인의 유형에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고, ② ‘투자’의 정의에 무담보 교환사채 인수,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 체결, 프로젝트 투자 등을 포함하며, ③ ‘농림수산물식품투자’의 정의를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물식품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식품 관련 산업을 말한다.	제2조(정의) ----- -----. 1. “농림수산물식품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을 말한다. 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 나.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어업, 같은 호 마목에 따른 양식업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 라.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수산물식품산업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식품 관련 산업

현행	개정안
제3조(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의 범위)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이하 “농식품경영체”라 한다)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2.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물식품사업자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품사업자 및 「수산물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산물식품사업자
3. 농림수산물식품의 소재(농림수산물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상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를 말한다)	다. 농림수산물식품의 소재(농림수산물식품의 생산에 사용되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그 생산설비(소재를 제조·가공하는 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제조를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상법」에 따른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자회사 또는 합명회사를 말한다)
가.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물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1) 총매출액 중 농림수산물식품 소재 또는 그 생산설비의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
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현행	개정안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제2조(정의) 2.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말한다. 가. 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또는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나. 유한회사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의 인수 다.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물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신설>	는 기업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 라.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수산물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3. -----. 가. ----- 전환사채, 무담보 교환사채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다. (현행과 같음) 라. 투자금액의 상환 만기일이 없고 이자가 발생하지 아니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 인수계약의 체결

현행	개정안
<신설>	마. 무담보전환사채의 발행을 사전에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체결
<신설>	바.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가 개발하거나 생산하며 다른 사업과 회계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특정 사업의 지분 인수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분 인수
<신설>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방식에 준하는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식
<신설>	4. “농림수산물식품투자”란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⁵⁾의 농림수산물식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의 범위)	<삭제>

5) 농림수산물식품경영체를 앞서 ‘농식품경영체’로 약칭하였으므로 ‘농식품경영체’로 수정 필요

가. 유한책임회사 추가(안 제2조제2호다목 및 제2조제3호나목)

현행법은 이 법의 투자대상이 되는 농식품경영체의 기업 유형에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의 4가지 회사법인의 유형을 열거하고, 출자인수 방식의 투자 대상 기업에 유한회사만을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 법의 투자대상이 되는 농식품경영체 기업의 유형과 출자인수 방식의 투자 대상에 각각 ‘유한책임회사’를 추가하려는 것임.

유한책임회사는 내부적으로는 정관자치가 보장되는 조합의 실질을 갖추고 외부적으로는 투자액의 범위 내에서 유한책임을 부담하는 주식회사의 장점을 결합한 회사법인의 형태로, 종전 「상법」상 회사의 종류에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자회사, 합명회사가 있었으나, 2011년 「상법」 개정으로 유한책임회사가 추가되었음.

[회사법인 유형별 비교]

구분	합명회사	합자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사원의 구성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주주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사원
사원의 수	2인 이상	각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1인 이상
사원의 책임범위	직접, 연대, 무한책임	(무)직접, 연대, 무한책임 (유)직접, 연대,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간접, 유한책임
출자 목적물	재산, 노무, 신용	(무)재산, 노무, 신용 (유) 재산	재산	재산	재산
업무집행 기관	무한책임사원	무한책임사원	이사회, 대표이사	이사	사원 또는 사원이 아닌 자

유한책임회사는 출자자인 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 설립절차나 기관(사원총회, 이사 등)이 간소하여 사모투자펀드나 벤처기업 등 신생 기업에 적합한 회사형태로 평가되고 있음.

[유한회사와 유한책임회사 비교]

구분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정의	· 주식 대신 출자액을 기준으로 사원*의 지분을 정하고, 사원은 출자액 한도 내 책임을 지는 회사 형태	· <u>사원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며</u> , 사원의 책임은 출자액으로 한정되는 회사 형태
소유자	· 사원 * 회사 출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가짐	· 사원 * 회사 출자 금액에 비례하여 지분을 가짐
의사결정 과정	· (의사결정) 사원총회 · (방식) 정관에 따른 의결, 대표이사의 권한 * 사원총회 의무적 개최 및 엄격한 절차와 규제로 통제	· (의사결정) 사원 모두 참여(사원총회x) · (방식) 사원 전원 동의 또는 업무 집행자 결정 * 정관으로 조직운영(이사선임 등)이 유한회사에 비해 자유로움
경영참여 방법	· 간접참여 및 직접 참여 (주식회사보다 직접참여율 높음) · 정관과 사원총회를 통해 소유와 경영을 일정 부분 분리 가능	· 직접참여(전원 모두 참여) · 유한책임회사 정관상, 일반적으로 사원 모두 경영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자금조달 방식	· 사원의 추가 출자, 은행 차입 등의 자금 조달 (주식회사 대비 자금조달 규모 제한적)	· 사원의 추가 출자, 은행 차입 등의 자금 조달 (자금 조달 규모 가장 제한적)
외부감사	· 일정 규모 이상 의무	· 없음
주요 특징	· 소유와 경영의 유연성 · 엄격한 자본운용 규정 · 전통적인 중소기업 형태	· 출자자 책임 한정, 신속한 의사결정 가능 · 자본운용의 유연성 높음 ·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에 적합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상법」상 모든 회사의 유형을 투자 대상으로 인정⁶⁾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한책임회사만을 투자 대상에서 배제할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도 이를 반영하고 있음.⁷⁾

6) 현행법 제3조제3호 각 목외의 부분

나. 투자방식 다양화

현행법은 ‘투자’의 정의를 ①주식회사가 발행한 주식, 무담보 전환사채, 무담보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인수, ②유한회사의 자본증가에 따른 출자 인수, ③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른 투자방식]

구 분			설 명
가 목	주식 투자	보통주	주권에 대한 특별한 권리 내용이 없는 주식이며, 우량 비상장기업 투자나 주로 상장시장에서 거래
		우선주	보통주와는 달리 다양한 권리(상환권, 전환권 등)가 포함되어 있는 주식
	주식 연계 채권	전환사채 (CB)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전환권)가 부여된 사채 (전환시 사채 → 주식으로 전환)
		신주인수권부 사채(BW)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이를 각각 행사할 수 있는 사채 (신주인수권을 행사해도 사채는 유지)
나 목	유한회사의 출자 인수		유한회사에서 자본이 증가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출자를 인수
다 목	농림수산식품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식품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개정안은 현행법상 투자의 방식에 아래의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다양한 방식의 농림수산식품투자를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 7)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주식회사의 주식, 무담보전환사채, 무담보교환사채 또는 무담보신주인수권부사채의 인수
 - 나.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의 출자 인수

(1) 무담보교환사채 인수(안 제2조제3호가목)

‘교환사채(EB)’는 전환사채(CB)와 유사하나 전환사채는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가 부여되는 반면, 채권자에게 채권 발행기업의 자기주식 또는 해당 기업이 소유한 타사 주식으로 교환할 권리가 부여되는 채권으로, 「상법」 제469조⁸⁾에 근거함.

이에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신용보증기금법」 등 다른 법률에서는 교환사채를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과 동일하게 투자 방식으로 인정하고 있고,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투자 방법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8) 「상법」 제469조(사채의 발행) ① 회사는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사채(社債)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사채에는 다음 각 호의 사채를 포함한다.

2.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 또는 상환할 수 있는 사채

「상법 시행령」 제22조(교환사채의 발행) ① 법 제469조제2항제2호에 따라 사채권자가 회사 소유의 주식이나 그 밖의 다른 유가증권으로 교환할 수 있는 사채(이하 “교환사채”라 한다)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교환할 주식이나 유가증권의 종류 및 내용 2. 교환의 조건 3. 교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

(2) 조건부지분인수계약 및 조건부지분전환계약 체결(안 제2조제 3호라목 및 마목 신설)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Simple Agreement for Future Equity)이란 투자자가 기업에 자금을 투자하되, 투자 시점에서는 지분율이나 기업가치를 확정하지 않고, 투자자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질 경우 그 투자에서 결정된 기업가치 평가와 연계하여 최초 지분투자의 가치가 결정되는 계약임.

조건부지분인수계약은 만기일이나 이자는 없고, 만약 투자자가 해당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장래 지분으로 전환될 권리로 남아있게 됨.

한편, 조건부지분전환계약(Convertible Note)은 투자자가 향후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지닌 전환사채의 형태로 투자하되, 후속 투자가 이루어지면 후속 투자 시의 가치 평가액을 기반으로 전환가액을 정하는 계약임.

계약기간 내 후속투자가 없으면 사채계약대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 하지만, 후속투자가 발생하면 전환사채를 지분으로 전환하여 기업의 성장에 참여할 수 있음.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의 경우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달리 후속투자가 발생하지 않아도 원리금 상환 의무가 발생하므로 피투자기업에 부담이 될 수 있으나, 투자자 입장에서는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를 상대적으로 쉽고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측면도 있음.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 비교]

구분	조건부지분인수계약 (SAFE)	조건부지분전환계약 (Convertible Note)	전환사채(CB)
대상	벤처·스타트업(주로 초기 창업기업에 적용)		일반기업
성격	계약&지분형 투자방식 (만기·이자×, 지분인수권)	계약&채권형 투자방식 (사채+전환사채 인수권)	유가증권&채권형 (신주로 전환이 가능한 사채)
전환 시기	후속투자 유치시 (지분가격, 전환가격 등은 후속투자시 기업가치에 따라 결정)		

자료: 기획재정부

창업 초기에는 기업·투자자 간 기업가치에 대한 이견으로 투자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여 투자가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는데, 두 투자 방식은 모두 투자가 이루어지는 당시에 기업가치를 결정하지 않음으로써 가치산정이 어려운 초기창업기업에 대한 투자에 적합하다는 공통점이 있음.

우리나라에서 조건부지분인수계약과 조건부지분전환계약은 각각 2020년, 2023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를 확보하였는데, 2020년 제도 도입 이후 SAFE 투자 금액이 2020년 11억원에서 2023년에는 85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창업기업 투자에 활발히 사용되고 있음.

[연도별 SAFE 투자 현황]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 농식품투자조합에도 동 투자방식을 도입함으로써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프로젝트 투자(안 제2조제3호나목)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 방식은 기업 자체에 투자하는 주식·채권 투자 방식과 기업의 특정 사업에 한하여 가치가 비교적 명확히 파악되는 경우에 실시되는 프로젝트 투자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음.

현행법 제2조제2호(투자의 정의) 다목9)에 따라 현행법상으로도 프로젝트 투자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정안은 이를 투자 유형의 하나로 명시함으로써 다양한 투자 기법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이와 같은 프로젝트 투자는 2013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도입된 이후 현행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도 투자 방식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참고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펀드(수산펀드 미포함) 전체 투자 금액 중 프로젝트 투자는 금액 기준 6.1%를 차지함.

[농식품펀드 프로젝트 투자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프로젝트 투자	주식형 투자	채권형 투자	지분투자	전 체
투자(A)	927(6.1%)	10,337(68.2%)	3,674(24.2%)	224(1.5%)	15,161
회수(B)	791(7.8%)	5,645(55.8%)	3,623(35.8%)	54(0.5%)	10,113
회수율(B/A)	85%	55%	99%	24%	67%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9) 농림수산물경영체의 자산을 농림수산물산업 및 관련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분하기 위하여 농림수산물경영체에 대한 자금의 지원

다.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정의 신설

현행법은 농림수산식품투자를 별도로 정의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경우 개별 조문에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림수산식품투자’를 ‘농식품경영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이에 따라 실태조사(안 제4조의2) 및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 지원 사업(안 제4조의4) 등이 적용되는 대상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농식품경영체’가 농림수산식품산업 외의 사업도 병행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농식품경영체의 농림수산식품 관련 사업’으로 한정할 필요성도 있다고 보임.

다만, 현행법에서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 규정하고 있는데,¹⁰⁾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정의가 신설될 경우 법체계의 정합성 확보를 위하여 관련 규정을 ‘농림수산식품투자를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으로 함께 정비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0) (예)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 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4.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의 책무 신설

개정안은 투자관리전문기관과 농식품투자조합이 농식품경영체가 성장하도록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할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제4조 (국가의 책무 등)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과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은 농식품경영체가 성장하도록 농림수산식품 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현행법은 국가가 농림수산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성장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강구·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국가의 책무 외에 투자관리전문기관¹¹⁾과 농식품투자조합¹²⁾에 대해서도 농식품경영체가 성장하도록 농림수산식품산업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책무를 신설하려는 것임.

11) 법 제5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설립 등) ① 국가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과 농식품경영체의 성장·발전을 위한 투자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12) 법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운용을 담당하는 주체이고 농식품투자조합은 농식품경영체에 직접 투자하는 주체라는 점에서 이들의 적극적인 책무 이행을 통해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려는 취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동 법의 목적 조항에 따르면 동 법의 궁극적인 목적이 농림수산식품산업의 진흥이므로, 책무의 내용을 “농림수산식품산업이 성장하도록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바꾸어서술하는 한편, 책무의 주체 중 ‘농식품투자조합 등’이 포함하는 대상이 불명확하므로, ‘농식품투자조합’으로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5. 실태조사 실시 및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투자의 현황 및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농림수산식품투자 관련 정보의 종합적 제공 및 체계적 성과 관리를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2(실태조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의 현황과 성과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장 2. 지방자치단체의 장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의 장 4. 제5조에 따라 설립하거나 지정한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장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
<신설>	제4조의3(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식품투자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하기 위하여 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조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63조의2에 따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종합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범위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은 정책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정책 효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농림수산물투자 정책의 합리적 수립·추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안 제4조의3제2항에서 종합관리시스템 업무의 위탁 대상을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업정책보험금융원’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의 현행법상 지위는 ‘투자관리전문기관’이므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 일원화할 필요가 있음.

6. 투자촉진 지원 사업 근거 마련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및 해수부장관이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하여 ① 농림수산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기반 조성, ② 농림수산식품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③ 농식품경영체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조의4(농림수산식품 투자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의 추진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도모하고 농림수산식품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1. 농림수산식품 산업 육성 및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기반 조성 2. 국내외 농림수산식품투자 동향 및 여건 분석 3. 농식품경영체 및 제13조에 따른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투자 지원 4. 농식품분야 공신력 있는 투자 정보 및 지원 사업에 관한 정보의 제공 5. 농림수산식품투자 협의체 결성과 운영 지원 6. 농림수산식품투자 성과창출 강화를 위한 지원 7. 농림수산식품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8. 농림수산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관련 협회·단체 등과의 교류 지원 9. 외국인투자 유치 및 국제교류 확대

2025년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농림수산물식품모태펀드를 조성하는 한편, 관리수수료(‘25년 기준 53억 3,800원)를 재원으로 농림수산물식품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였음.

[2025년 투자촉진 지원 사업 현황]

구 분		사업내용
제1호	산업·투자 기반 조성	■ 농림수산물식품 모태펀드 결성
제2호	투자 동향 분석	■ 농식품 산업·기업 분석 보고서 발간 - 전·후방 산업 트렌드, 기술경쟁력 분석 등 신뢰성 있는 투자 정보 제공
제3호	해외 진출 지원	■ 해외 박람회 참가 지원 - 피투자기업 해외진출 확대 등을 위해 해외 주요 박람회 부스 등 지원 ■ KF 글로벌 브릿지(‘26년 신규사업) - K-FOOD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현지에서 해외 바이어와 1:1 비즈니스 매칭 지원
제4호	투자 정보 제공	■ 농식품 투자정보 플랫폼 ‘ASSIST’ 운영 - 경영체, 민간투자자 간 투자정보 교류 지원 및 관련 정부지원사업 정보 통합 제공
제5호	투자협의체 운영	■ 출자전략협의회 개최 - 농식품모태펀드 운용실적 공유 및 향후 운용계획 논의 ■ 농식품모태펀드 제도개선 협의체 개최 - 운용사 및 전문가 등 업계 관계자 대상으로 제도개선 사항 등 의견수렴
제6호	투자 성과 강화 지원	■ 피투자경영체 온라인마케팅 지원 - 온라인 유통채널 확장과 매출 증대를 위한 SNS·크리에이터 협업 라이브커머스 운영
제7호	전문인력 양성	■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관리역량 향상교육 수행 - 투자조합 운용사 임직원 대상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자조합 운용·관리 교육 추진
제8호	협회·단체 교류 지원	■ LP-GP 교류회 개최 - 농식품모태펀드 민간자본 유치 확대를 위한 운용사와 민간출자자 간 네트워크 장 마련
제호	외자유치·국제교류	■ (해당 사항 없음)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에 따라 이러한 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경우 투자 촉진 지원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됨.

다만, 안 제4조의4제3호에서는 투자촉진 지원 사업으로 ‘농식품투자조합 등의 해외투자 지원’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농식품투자조합이 국외 사업체에 투자하는 것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으므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7.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확대

개정안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규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맞추어 정비하면서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사업 지원 사업을 신규로 추가하고(안 제9조제1항제6호 신설),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출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u>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영위한다.</u>	제9조(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 등) ① ----- <u>제5조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 사업을 한다.</u>
1. <u>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대한 출자</u>	1. <u>제7조제1항에 따른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의 결성과 업무의 집행</u> ※현행 제6호
2. <u>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의 결성 및 운영</u> <u><신설></u>	2. <u>제8조제1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출자</u> ※현행 제1호
3. <u>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u>	3. <u>농식품투자조합 결성과 업무의 집행</u> ※현행 제2호
4. <u>농식품경영체에 대한 민간 및 해외투자자본의 유치 지원</u>	4.·5. (현행 제3호 및 제4호와 같음)
5. <u>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u>	<u><삭제></u>
6. <u>농식품투자모태조합 자산의 관리·운용</u>	6. 「 <u>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u> 」 제6조에 따른 해외농업자원

현행	개정안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8.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금관리주체로부터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위탁받은 사업 <신 설> <신 설>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가, 국가가 설치한 기금 또는 국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신 설> ③ ~ ⑤ (생략) ⑥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제2항부터	<u>개발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사업 지원</u> 7.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 ※현행 제5호 8. 농림수산식품투자 성과의 관리 등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부수되는 사업 ※현행 제7호 9. 국가, 지방자치단체나 기금관리주체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와 관련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한 사업 ※현행 제8호 10.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 제1항 각 호의 사업----- ----- ----- -----. ③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고시된 공공기관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출자할 수 있다. ④ ~ ⑥ (현행 제3항부터 제5항까지와 같음) ⑦ ----- 제2항과 제4

현행	개정안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승인 또는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항 및 제5항 ----- ----- -----.

먼저 개정안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¹³⁾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등의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사업 지원 사업을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업무에 신규로 추가하고 있음.

이는 현행법령상 ‘농식품경영체’의 범위¹⁴⁾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가 포함되므로, 투자관리전문기관으로부터 투자를 받는 농식품경영체가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경영체의 해외진출 및 해외협력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른 분야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지원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서 특정 사업 분야에 한정하여 지원 사항을 규정하는 것은 투자관리전문기관의 대표적·보편적 업무를 규정하는 다른 각 호의 규정과 비교할 때 정합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음.

13)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6조는 해외농업·산림자원개발심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항으로 같은 법 제2조(정의)제6호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임.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란 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를 말한다.

14) 「그 밖의 농림수산물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조(농림수산물식품산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범위)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법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3호에 따른 그 밖에 소득 향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농림수산물식품산업 관련 업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산업에 종사하는 자 (중략)

2.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조제6호의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3.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의 원양산업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7조?및?같은 법 시행령?제41조에 따른?「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농림수산물식품분야 연구개발(R&D)에 종사하는 자(「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달리 분류되지 않는 분야”에 해당하는지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 부서의 확인에 따른다)

다음으로 개정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투자관리 전문기관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출자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에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는 근거는 마련되어 있으나,¹⁵⁾ 투자관리전문기관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하여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에도 출자가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농림 수산식품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보임.

참고로 국가 예산의 경우 출자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요구되지는 않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지방재정법」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출자가 가능함.

15) 제7조(농식품투자모태조합의 결성) ①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자료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농림수산식품투자모태조합(이하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할 수 있다.

1. 국가
2. 지방자치단체
3.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을 관리하는 자(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

②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을 그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농식품투자모태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8. 세컨더리 펀드 등에 대한 투자의무 완화 근거 신설

개정안은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농식품투자조합(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② (생략) ③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금액을 우선적으로 투자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3년에도 불구하고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투자의무 이행 유예기간을 줄 수 있다. ⑤ ~ ⑦ (생략) <u><신설></u>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⑧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농식품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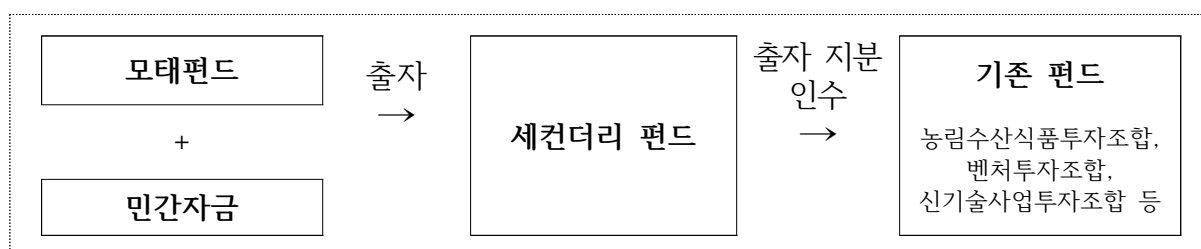
가.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의 법적 근거 마련

일반적으로 벤처투자조합과 같은 투자기관은 투자한 기업이 성장하고 기업가치를 제고한 뒤, 상장(IPO)이나 기업매각(M&A) 등을 통한 최종 회수(exit)로 수익을 실현함.

그러나 이러한 회수 과정은 기업 상황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유동성 확보, 포트폴리오 재조정 등의 사유로 중도에 펀드 지분을 매각하려는 투자자의 수요가 발생하기도 함.

이 때 세컨더리 펀드는 투자자에게 중간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펀드로,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란 농식품투자조합의 만기 이전에 지분을 매도하고자 하는 투자자(유한책임조합원, LP)¹⁶⁾가 있는 경우 해당 지분을 매입하는 방식의 펀드를 의미함.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운영 기본 구조]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16) 유한책임조합원(LP, Limited Partner)은 투자조합의 출자금을 담당하는 투자자로, 투자 손실은 출자금 한도로 제한되며, 조합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음. 반면, 업무집행조합원(GP, General Partner)은 비교적 소규모의 자기자본을 출자하며 투자조합의 운용 및 투자 의사결정을 담당함. 농식품투자조합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은 민간 자산운용사이고, 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과 민간 출자자(금융기관, 일반법인 등)는 유한책임조합원에 해당함.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는 LP의 자금 유동성을 제고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시장 참여 유인을 확대하는 장점이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식품투자조합의 투자 방식에는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농식품모태펀드는 이를 인정하고 있는 법률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상 ‘벤처투자조합’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투자조합’으로 자조합을 결성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LP지분을 매입하고 있는 상황임.

[투자기구 비교]

구분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근거법령	농수산식품투자조합법 제11조	벤처투자법 제50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
소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참고로 현재 농식품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는 2021년 도입 이후 4개 조합, 2,251억원 규모임.

[농식품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결성 현황('25.12월 기준)]

(단위: 억원)

연도	조합명	조합유형	결성액
2021	하이브리드 ESG 세컨더리펀드 제일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520
2023	이크릭스-넥스트지 세컨더리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200
2024	에임하랑 농업혁신 세컨더리 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301
2025	티에스 17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벤처투자조합	1,230
계			2,251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을 인수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법률에 명시하여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의 법적 근거를 동 법에 마련하려는 취지임.¹⁷⁾

개정안에 따라 동 법에서 LP지분 인수 방식이 인정되는 경우 현재 농식품모태조합 출자 주체(농림축산식품부)와 자펀드의 관리 주체(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가 달라 자료요청이나 시정조치 등 관리·감독이 어려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17) 참고로 우리 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림수산물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만희의원안, 의안번호 제2205584호)」은 투자의 방식에 “다른 농식품투자조합의 조합원이 보유하고 있는 해당 조합 출자지분 전부 또는 일부의 인수”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세컨더리 펀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므로, 해당 법안과 병합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음.

나. LP지분 세컨더리 펀드 등에 대한 투자 의무 완화

현행법에 따르면 농식품투자조합은 등록 후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 60%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여야 하고, 20% 이상의 금액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에 투자하여야 함.¹⁸⁾

그러나 세컨더리 펀드는 농식품경영체를 직접 발굴하여 투자하는 일반 펀드와 달리 기존 투자자의 지분을 매입하는 거래가 중심이므로 이와 같은 법률상 투자 의무를 일률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참고로 지금까지 결성된 세컨더리 펀드의 투자 의무 준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결성된 세컨더리 펀드는 현행법상 투자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며, 기타 펀드는 아직까지 투자 의무 준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음.

18) 시행령 제14조(투자 의무비율 등) ① 법 제14조제3항 전단에서 “등록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란 등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말하며, 같은 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②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20을 말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신용도 저하, 업무집행조합원의 파산, 그 밖에 예측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로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투자 의무비율을 지키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투자 의무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 의무비율을 계산할 때 등록 당시에 납입한 출자금보다 출자금이 증액된 경우에는 그 증액분에 대한 투자 의무비율은 증액일을 기준으로 연차적으로 따로 계산한다.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투자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투자회수, 경영정상화, 출자방식 등으로 인하여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투자를 이행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한다.

시행규칙 제5조(일정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우선투자) 법 제14조제3항 후단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식품경영체”란 상용근로자 수가 100명 이하이거나 연 매출액이 100억원 이하인 농식품경영체를 말한다.

[농식품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투자 의무 준수 현황]

(단위: 억원)

연도	조합명	투자기간	의무투자액	투자액	투자의무 준수 여부
2021	하이브리드 ESG 세컨더리펀드 제일호	`21.12.09.~ `25.06.08.	200(출자공고상 최소결성규모)	201.7	준수
2023	이크릭스-넥스트지 세컨더리투자조합	`23.08.29.~ `27.08.28.	120(출자공고상 최소결성규모(200)의 60%)	52	투자 진행중
2024	에임하랑 농업혁신 세컨더리 투자조합	`24.07.26.~ `28.07.25.	150(출자공고상 최소결성규모(250)의 60%)	117.7	투자 진행중
2025	티에스 17호 세컨더리 투자조합	`25.11.28.~ `29.11.27.	180(출자공고상 최소결성규모(300)의 60%)	-	투자 진행중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이에 개정안은 앞서 설명한 LP지분 유동화 세컨더리 펀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투자의무를 펀드 성격에 맞추어 달리 정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둌으로써 중간회수 시장을 활성화하려는 취지임.

투자의무 규제가 완화되는 경우 자펀드 포트폴리오의 자율적 구성으로 수익성을 극대화할 수 있음에 따라 민간 출자자 모집이 보다 용이해지는 장점이 있음.

이를 통해 세컨더리 펀드가 활성화되는 경우 농림수산식품 분야 투자 생태계 전반의 자금 순환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¹⁹⁾

19) 국회예산정책처, 중소기업모태펀드 등 정책펀드 종합평가, 2024.11.

다만, 개정안은 투자 의무를 달리 정하도록 하면서 그 기준이나 범위는 제시하고 있지 않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개별 자조합의 특성이나 판단에 따라 투자 의무를 각각 다르게 정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음.

특히,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을 결성·운용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 비율을 일반 농식품투자조합과 달리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참고로,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에서는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령으로 위임하고, 시행령에서 완화된 투자비율을 직접 정하고 있음.²⁰⁾

20)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51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에 대해서는 투자 의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비율 산정의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벤처투자조합의 투자 의무) ②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20퍼센트를 말한다.

⑦ 법 제51조제6항에서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다른 벤처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벤처투자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벤처투자조합”이란 해당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액의 60퍼센트 이상(제1호의 경우 인수·합병 전에 인수·합병 대상 기업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신용공여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한다)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한 벤처투자조합을 말한다.

⑧ 제7항에 따른 벤처투자조합이 법 제3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6호 및 제7호의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투자 의무비율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0퍼센트로 한다.

9.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개정안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삭제 또는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부터 제43조까지, 제48조,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1항·제2항·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185조부터 제187조까지, 제218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9까지 및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은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제19조(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특례) ① 공모농식품투자조합(「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30조부터 제36조까지, 제38조, 제4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0조, 제62조, 제63조, 제65조, 제80조,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3조까지, 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86조, 제218조, 제219조, 제221조부터 제223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41조까지, 제244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현행	개정안
<u>규정으로 한정한다)을 위반한 경우 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부터 제22조(제10항은 제외한다)까지 및 제2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제2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그 조치내역을 금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u>	<u>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 조치결과를 -----.</u>

현행법상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²¹⁾에 따른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농식품투자조합으로, 사모펀드는 소수의 특정 투자자를 대상으로 자금을 모집하는 펀드인 반면, 공모펀드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개적으로 자금을 모집하며,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산투자 의무,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 수시 공시 의무 등 다양한 규제를 받는 특징이 있음.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투자모태조합 운용 이래 공모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한 사례는 없음.

2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사모집합투자기구”란 집합투자증권을 사모로만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의 총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출한 100인 이하인 것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제249조의11제6항에 해당하는 자만을 사원으로 하는 투자합자회사인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2.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일반 사모집합투자기구”라 한다)

[공모펀드와 사모펀드 비교]

구분	공모펀드	사모펀드
모집 방식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적으로 모집	소수의 특정 투자자에게 비공개로 모집
투자자	누구나 가입 가능 (일반투자자 중심)	기관투자자, 3억원 이상 투자하는 적격 일반투자자
최소 투자금액	제한 없음(소액투자 가능)	개인 3억원 이상 (레버리지 200% 이상 펀드는 5억원 이상)
투자자 수	제한없음	100인 이하 (일반투자자는 49인 이하로 제한)
운용 및 공시	분산투자 의무, 투자설명서 제공 의무, 수시 공시 의무 등	운용 자율성이 높으며, 상세 포트폴리오 공시 의무 없음
환매	비교적 자유로움(중도 환매 가능)	중도 환매 어려움
투자자 보호	수탁사 감시, 외부 감사 등 규제	투자자 간의 계약을 중시, 공적 규제 최소화
레버리지 한도	자산 운용에 따라 제한	순자산의 400% 이내 운용 가능
펀드 예시	뮤추얼펀드, 인덱스펀드 등	헤지펀드, PEF 등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맞추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를 삭제하거나 추가하는 등 정비하려는 것으로,

① 보고 및 공시 등에 관한 사항은 현행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므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인가요건 및 절차), 제33조(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의 적용을 제외하도록 하고, ②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1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4조(손해배상책임), 제185조(연대책임) 등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도록 개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며, ③ 현행법상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 적용되었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24조(내부통제기준)부터 제26조(준법감시인)까지는 적용을 제외하여 금융회사 수준의 내부통제 체계 구축의무를 완화하려는 취지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특례 조항	개정안	주요 내용	비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신규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및 절차	
제33조	신규	업무보고서 및 공시 등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6조, 제22조
제37조	삭제	신의성실의무 등	
제39조	삭제	명의대여의 금지	
제48조	삭제	손해배상책임	
제50조	삭제	투자권유준칙	
제61조	삭제	소유증권의 예탁	
제63조의2	삭제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 조치 의무	
제64조	삭제	손해배상책임	
제81조	삭제	자산운용의 제한	
제84조	신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 등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4조 제5항
제184조 제3항	신규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15조
제185조	삭제	연대책임	
제187조	삭제	자료의 기록·유지	
제220조	삭제	조합원총회	
제242조	삭제	이익금의 분배	
제249조의10부터 제249조의22까지	신규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신규	금융위원회 명령 및 승인 등, 검사 및 조치	「농수산물투자조합법」 제27조, 제28조, 제30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특례 조항	개정안	주요 내용
제11조	삭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을 제외한 영업행위 금지
제12조	삭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등록
제14조	삭제	신의성실의무 등
제16조	삭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관리책임
제22조 제6항	삭제	협회등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금융상품등에 관한 광고 관련 기준을 준수하는지 확인, 의견 통보
제24조부터 제28조	삭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업종별 영업행위 준수사항
제44조	삭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제45조	삭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제47조	삭제	위법계약의 해지
제48조부터 제64조	삭제	금융위원회의 감독 및 처분
제65조	삭제	업무의 위탁
제66조	삭제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지도·감독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관련 개정사항]

특례 조항	개정안	주요 내용
제24조	신규	내부통제기준
제25조	신규	준법감시인의 임면 등
제26조	신규	준법감시인의 자격요건

주: 개정안의 특례 조항에서 삭제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는 해당 규정이 적용되고, 특례 조항이 신규로 도입되면 공모농식품투자조합에는 해당 규정의 적용이 배제됨.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다만, 개정안의 일부 조문에는 인용에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안 제19조제2항 후단에서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은 제 1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추는 것”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개정안에서 인용하는 제13조제1항²²⁾은 일반 농식품투자조합

22)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등) ① 제11조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에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 (이하 “농식품투자조합”이라 한다)을 결성한 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다만, 출자금은 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할 수 있다.

의 등록에 적용되는 요건으로서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의 특성상 적용이 어려운 요건이 포함되어 있음.

이에 개정안에서 참고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제2항의 내용과 비교해 볼 때, 개정안은 현행법 제11조제4항²³⁾을 인용하려는 취지였던 것으로 생각됨.

둘째, 개정안은 안 제19조제4항에서 “금융위원회는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이 이 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제49조제1항·제2항 또는 제6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조치는 제28조(행정처분)과 제30조(등록의 취소)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조문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을 것임.

2. 존속기간이 3년 이상일 것

3. 업무집행조합원의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각목 생략>

4. 그 밖에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시행령 제13조(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요건) ④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 조합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 모두를 말한다.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2.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3.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23)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④ 제19조제1항에 따른 공모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으로 하고, 제3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10. 서류의 열람 절차 및 방법 위임

개정안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에 관한 서류를 열람하는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을 고시로 정하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2조(조합의 공시) 업무집행조합원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u>갖추어 두고</u>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2.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3. 그 밖에 조합의 운영에 관한 서류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것 <u><신 설></u>	제22조(조합의 공시) ① ----- ----- <u>갖추어</u> ----- -----. 1. ~ 3. (현행과 같음) <u>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u>

현행법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① 해당 농식품투자조합의 규약, ② 매 회계연도의 결산서 등을 사무소에 갖추어 두고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할 의무를 두고 있음.

이는 공적 재원의 투자를 받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열람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개정안은 이해관계인 등이 해당 서류에 접근할 수 있는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 규정을 보완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향후 관련 고시(「농림수산물투자모태조합 및 농림수산물투자조합의 운용 등에 관한 기본규정」)에 ‘사무소 내 누구든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므로, 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것으로 보임.

한편, 현행 조문의 내용이 ‘조합의 공시’가 아닌 ‘열람’이라는 점을 반영하여 ‘조합 서류의 열람’으로 조제목을 수정할 필요가 있음.²⁴⁾

24) 개정안은 주요내용에서 이를 제시하고 있으나 개정문에서 누락된 것으로 보임.

11. 필요한 조치 및 자료제출 요구 권한 신설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농식품투자조합 및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하여 장부·서류 등 검사 결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안 제27조제4항 신설),

농림수산식품투자 활성화 및 효율적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안 제27조의2 신설),

농식품투자조합이 보고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원 중단, 등록 취소의 행정처분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시정명령, 지원 중단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8조제7호·제8호 및 제30조제1항제5호 신설).

아울러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 시 청문 절차의 명시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3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보고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범위에서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기관의 사무소와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경우에는 검	제27조(보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사 7일 전에 검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사전통지의 경우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u><신 설></u> <u><신 설></u>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 6. (생략) <u><신 설></u> <u><신 설></u>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27조의2(자료제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림수산물투자 활성화와 효율적인 정책 수립·추진을 위하여 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하여 농림수산물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28조(행정처분) ----- ----- ----- ----- -----. 1. ~ 6. (현행과 같음) 7.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8. 제27조의2에 따른 자료의 제출 요구에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

현행	개정안
제30조(등록의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 4. (생략) <u><신설></u> <u><신설></u>	<u>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료의 확인 또는 증명을 한 자</u> 제30조(등록의 취소) ① ----- ----- ----- -----. 1. ~ 4. (현행과 같음) 5. <u>제27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취소를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u>

현행법 제27조는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과 투자관리전문기관에 업무집행 상황 등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이 이러한 검사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추가하고, 농림수산물식품투자

실적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며, 이에 대한 제재처분(시정명령, 지원중단, 등록취소)을 규정함으로써 투자관리전문기관 및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려는 취지임.

현행법상 업무집행 상황에 관한 보고·검사 규정의 경우 이에 따른 후속조치나 위반 시 제재조치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측면이 있었음.

이에 농림수산식품투자의 집행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과 농림수산식품투자 실적에 관한 정확한 자료 확보를 통해 농림수산식품투자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의 효율적 수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청문 규정은 「행정절차법」 제22조에 따라 인허가 등의 취소 시에는 반드시 청문을 거쳐야 하므로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 취소시에도 청문을 실시해야 할 것이나,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이해를 제고하는 데 의의가 있음.²⁵⁾

다만, 안 제27조의2 신설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자료제출 요구 권한이 투자관리전문기관이나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 집행 상황을 점검하려는 취지라면 현행법 제27조(보고 등)와 요구의 대상 및 목적이 동일하므로 입법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통합하여 규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²⁶⁾

25) 현행법은 투자관리전문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시 청문 실시 규정(제29조제2항)을 두고 있음.

26) 한편, 안 제28조 각 호에서는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등을 행정처분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12.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

개정안은 공무수탁사인에 대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신설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31조의3(비밀누설금지) 제31조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현행법 제3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따라 농식품부장관 또는 해수부장관은 ① 농식품투자조합의 결산서 접수(법 제18조제1호), ②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 관련 정보관리(법 제26조제1항²⁷⁾), ③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제공(법 제26조제3항²⁸⁾) 업무를 투자관리전문기관(농금원)에 위탁하고 있음.

이에 따라 투자관리전문기관은 위탁사무 수행 과정에서 농식품투자조합과 농식품경영체와 관련된 개인정보, 신용정보, 영업비밀 등을 취급하게 됨.

그러나 투자관리전문기관 임직원이 이러한 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27) 법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의 창업 및 영업활동과 관련된 자금·인력·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고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정보를 투자관리전문기관, 농식품투자조합 등에 제공할 수 있다.

28) 법 제26조(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정보 제공 등)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조합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식품경영체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공정한 투자 환경을 저해하고 공적 자금 운용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는 직무상 취득한 비밀 누설에 대한 처벌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입법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조치로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13. 유사 명칭 사용금지

개정안은 유사 명칭의 사용금지 대상에 투자관리전문기관(농금원)을 추가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u>농식품투자조합</u> 이 아닌 자는 <u>농식품투자조합의 명칭</u> 이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 ---- <u>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합</u> 이 ----- <u>투자관리전문기관 또는 농식품투자조합</u> 의 -----.

현행법은 농식품투자조합에 대해서만 유사명칭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투자관리전문기관 또한 농식품 분야 정책금융의 집행 및 투자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공공성이 강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사 명칭이 사용될 경우 해당 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투자자의 혼동이나 오인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대상에 투자관리전문기관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타당한 입법조치라고 보임.

14. 벌칙 및 과태료 정비

개정안은 현행법에 따른 벌칙 및 과태료의 상한을 상향하고,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직무상 비밀누설 금지 의무 위반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며,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하고, 현행법 제27조에 따른 보고 및 검사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과태료(1천만원) 부과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3조(벌칙)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위반한 자는 <u>1년</u> 이하의 징역 또는 <u>1천만원</u>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제33조(벌칙) ① ----- ----- <u>5년</u> ----- - <u>5천만원</u> -----. ② 제31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u><신설></u>	제33조의2(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제34조(과태료) ① -----

현행	개정안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u>500만원</u>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6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결산서를 제출한 자 <u><신 설></u> 2.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3.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 ② (생략)	----- <u>1천만원</u> ----- -----. 1. (현행과 같음) 2. <u>정당한 사유 없이 제27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u> 3. 4.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행법은 제14조제5항²⁹⁾을 위반하여 금지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제16조³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자, 제28조³¹⁾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

29) 제14조(업무의 집행 등)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를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기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2. 농식품투자조합 명의로 자금을 차입하는 행위
3. 농식품투자조합의 재산으로 지급보증 또는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
4. 그 밖에 설립목적을 해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30) 제16조(결산 보고) 업무집행조합원은 해마다 농식품투자조합의 회계연도가 끝난 뒤 3개월 이내에 그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 제28조(행정처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식품투자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시정을 명하거나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2. 벤처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말소된 경우
3. 제14조제3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출자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

한 자, 제32조를 위반하여 유사 명칭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각각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그러나 동 법과 유사한 대상을 유사한 입법목적으로 규율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와 유사한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하는 행위’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및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³²⁾

한국벤처투자 임직원의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며,

결산 제출 의무 위반, 시정명령 위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보고 또는 검사에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³³⁾

을 이상의 금액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제5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의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5. 제20조제1항에 따른 청산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6. 제2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되거나 제30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

3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4조제2항제1호 또는 제52조제2항제1호를 위반하여 개인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 자신의 이익이나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조합의 재산을 사용한 자

33) 제8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제1항 후단, 제12조제1항 후단, 제24조제1항 후단, 제37조제1항 후단, 제50조제1항 후단 또는 제63조의2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2. 제16조, 제31조, 제44조 또는 제54조에 따른 결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결산서를 제출한 자

3. 제21조의2, 제32조, 제45조 또는 제61조에 따른 공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4. 제33조제1항 또는 제46조제1항에 따른 영업의 양수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5. 제37조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6. 제72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제77조를 위반하여 전문개인투자자, 개인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 벤처투자모태조합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현행법과 벤처투자법의 벌칙 및 과태료 비교]

구분		내용	현행	개정안	벤처투자법
벌칙	안 제33조제1항	제14조제5항에 따른 금지행위 위반	1년, 1천만원	5년, 5천만원	5년, 5천만원
	안 제33조제2항	제31조의3을 위반한 비밀 누설	<신설>	1년, 1천만원	1년, 1천만원
과태료	안 제34조제1항	제16조에 따른 결산서 제출 위반	500만원	1천만원	3천만원
		제27조에 따른 보고·검사 위반	<신설>		
		제28조에 따른 시정명령 위반	500만원		
		제32조를 위반한 유사명칭 사용	500만원		

이에 개정안은 법률상 의무의 이행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유사 입법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벌칙과 과태료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타당하다고 보임.

한편, 현행법은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양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사용인·종업원이 위법행위를 하더라도 실제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을 얻는 주체인 법인 또는 사용주는 처벌받지 않음.

이에 법인 또는 사용주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이들이 위반행위에 대한 예방 조치를 강구하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기대됨.

다만, 개정안의 내용 중 과태료와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개정안은 과태료의 상한을 3천만원으로 정하고 있는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과 달리 그 상한을 1천만원으로 상향하고 있는데, 과태료 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현행 과태료 상한이 500만원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를 단계적으로 상향하려는 취지에서 1천만원으로 상한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됨.

그러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2020.2.11.) 종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규정되어 있던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였는데, 이는 물가 상승 등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행정제재 효과를 확보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거짓보고, 허위보고, 자료미제출 등의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음.

또한, 벤처투자회사 등³⁴⁾이 결성하는 투자조합의 투자 분야(농식품 또는 벤처)의 차이에 따라 유사 위반 행위 간 과태료 상한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법률간 형평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임.

34) 제11조(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식품투자모태조합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이하 “벤처투자회사”라 한다)
2.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신기술사업금융업자”라 한다)
3. 투자관리전문기관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5의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상법」상 유한회사 또는 유한책임회사

가. 출자금 총액이 조합 결성 금액의 1퍼센트 이상일 것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둘째, 현행법 제22조(조합의 공시)에 대해서는 현행법상 제재규정이 미비하므로, 이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에서는 조합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도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문 의 처
02)6788-5414

참고1

농식품모태펀드 조성 및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펀드결성금액(개수)														
			'10~'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재원조성	일반	예산	1,678	600	500	300	200	100	200	350	400	400	400	550	5,678		
		회수금 등	124	90	100	600	400	320	300	390	467	1,126	835	656	5,408		
		소계	1,802	690	600	900	600	420	500	740	867	1,526	1,235	1,206	11,086		
	민간		1,728	450	460	555	420	305	481	767	811	1,005	773	967	8,722		
	계		3,530	1,140	1,060	1,455	1,020	725	981	1,507	1,678	2,531	2,008	2,173	19,808		
자펀드조성	일반	농식품일반	310 (2)	320 (3)	640 (3)	755 (2)	500 (3)	200 (1)	630 (2)	752 (2)	392 (2)	800 (2)	602 (3)	300 (1)	6,201 (26)		
			2,200 (12)	290 (1)											2,490 (13)		
	특기모태펀드	8대프로젝트	520 (2)	-	-	-	-	-	-	-	-	-	-	-	520 (2)		
		소규모경영체	200 (2)	100 (1)	100 (1)	-	-	-	-	-	-	-	-	-	200 (2)		
			300 (3)												500 (5)		
		6차산업	-	100 (1)	100 (1)	100 (1)	100 (1)	100 (1)	-	-	-	-	-	400 (4)			
														100 (1)			
		수출	-	130 (1)	100 (1)	100 (1)	-	-	-	-	-	210 (1)	-	210 (1)			
														330 (3)			
		R&D	-	100 (1)	-	-	-	-	-	-	-	-	-	-	-	100 (1)	
		AgroSeed	-	100 (1)	-	-	-	-	-	-	-	-	-	-	-	-	100 (1)
		창업아이디어	-	-	120 (1)	-	-	-	-	-	-	-	-	-	-	-	120 (1)
		스마트팜	-	-	-	500 (3)	-	-	-	-	-	-	-	-	-	-	500 (3)
		ABC	-	-	-	-	420 (2)	-	100 (1)	-	-	-	-	-	-	-	520 (3)
		농식품벤처	-	-	-	-	-	125 (1)	125 (1)	260 (2)	225 (2)	395 (3)	125 (1)	-	-	-	1,255 (10)
		지역특성화	-	-	-	-	-	100 (1)	-	110 (1)	-	-	120 (1)	240 (2)	-	-	570 (5)
		세컨더리	-	-	-	-	-	200 (1)	-	-	520 (1)	-	200 (1)	301 (1)	-	-	1,221 (4)
		마이크로	-	-	-	-	-	-	126 (2)	65 (1)	65 (1)	195 (3)	65 (1)	-	-	-	516 (8)
		징검다리	-	-	-	-	-	-	-	220 (1)	-	216 (1)	-	-	-	-	436 (2)
		영파머스	-	-	-	-	-	-	-	100 (1)	105 (1)	105 (1)	152 (1)	200 (2)	-	-	662 (6)
		그린바이오	-	-	-	-	-	-	-	-	150 (1)	400 (2)	204 (1)	210 (1)	-	-	964 (5)
		스마트농업	-	-	-	-	-	-	-	-	150 (1)	410 (2)	200 (1)	200 (1)	-	-	960 (5)
		창업보육	-	-	-	-	-	-	-	-	71 (1)	-	-	-	-	-	71 (1)
		푸드테크	-	-	-	-	-	-	-	-	-	-	100 (1)	210 (1)	-	-	310 (2)
		직접투자	-	-	-	-	-	-	-	-	-	10 (1)	30 (1)	-	-	-	40 (2)
		청년기업성장	-	-	-	-	-	-	-	-	-	-	-	-	310 (2)	-	310 (2)
		반려동물	-	-	-	-	-	-	-	-	-	-	-	-	101 (1)	-	101 (1)
		전통주	-	-	-	-	-	-	-	-	-	-	-	-	101 (1)	-	101 (1)
계			3,530 (21)	1,140 (9)	1,060 (7)	1,455 (7)	1,020 (6)	725 (5)	981 (6)	1,507 (8)	1,678 (10)	2,531 (15)	2,008 (13)	2,173 (13)	19,808 (120)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참고2

수산모태펀드 조성 및 자펀드 결성 현황

(단위: 억원, 개)

구 분			펀드결성금액(개수)												
			'10~'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계
재원조성	정부	예산	329	100	100	100	100	100	70	70	70	70	70	190	1,369
		회수금 등	-39*	-	-	40	-	-	175	170	110	60	10	20	546
		소계	290	100	100	140	100	100	245	240	180	130	80	210	1,915
	민간		290	50	50	60	50	50	105	60	75	66	53.4	143.5	1,052.9
	계		580	150	150	200	150	150	350	300	255	196	133.4	353.5	2,967.9
자펀드조성	일반펀드	수산일반	430 (3)	150 (1)	150 (1)	200 (1)	150 (1)	150 (1)	350 (2)	-	150 (1)	100 (1)	-	-	1,830 (12)
			150 (1)												150 (1)
	특수목적펀드	수산벤처	-	-	-	-	-	-	-	300 (2)	105 (1)	96 (1)	-	-	501 (4)
		스마트양식 산업혁신	-	-	-	-	-	-	-	-	-	-	133.4 (1)	-	133.4 (1)
		블루푸드테크	-	-	-	-	-	-	-	-	-	-	-	202 (1)	202 (1)
		세컨더리	-	-	-	-	-	-	-	-	-	-	-	151.5 (1)	151.5 (1)
계			580 (4)	150 (1)	150 (1)	200 (1)	150 (1)	150 (1)	350 (2)	300 (2)	255 (2)	196 (2)	133.4 (1)	353.5 (2)	2,967.9 (20)

자료 : 해양수산부

* 실제 회수액이 음수는 아니나 비용 및 결성에 소요되는 시간 등으로 인해 예산액에 비해 펀드결성금액이 적으므로 음수로 산출(예산액+회수액=소계)